

석면함유 건축물 · 설비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안내



'10.9.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보건규칙"이라 함)의 전부 개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·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되었고,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(유해작업시 보호구 착용과 흡연·음식물 섭취 금지, 유해장소 출입 금지 등)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한 「석면함유 건축물 · 설비에 대한 유지 · 관리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
1. 주요 개정내용('10.9.30 시행)

- 석면함유 건축물·설비에 대한 유지·관리의무 신설(제93조)
- 소규모 작업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 대상범위 및 조사방법 명확화(제94조)
- 근로자의 준수사항 신설(제49조, 제50조, 제53조, 제97조, 제98조, 제99조 등)



2. 건축주 · 사업주 ·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



석면함유 건축물 · 설비에 대한 유지 · 관리의무

- 사업주는 석면함유 건축물·설비의 손상, 노후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석면분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함

개정 내용 [신설]

제93조(유지·관리 의무)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,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,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(安定化)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(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)

※ 석면함유 건축물·설비를 유지·관리 목적으로 석면함유자재의 제거·대체 또는 덧씌움, 안정화 작업 수행시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작업 또한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해당되므로 보건규칙 제95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



소규모 작업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

- 건축주 등은 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·설비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 대상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자재이력, 성분분석 등 적절한 조사방법을 통하여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.

개정 내용 [중전 제236조의2 ▶ 제94조로 변경 및 개정]

제94조(사전조사)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, 설계 도서, 자재이력(履歷)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※ (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) 일정규모 이상(연면적·철거면적이 건축물의 경우 50㎡이상, 주택의 경우 200㎡ 이상)등의 건축물·설비를 해체·제거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함

※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작업이라 하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·설비를 철거·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작업 역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해당되므로 **보건규칙 제95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**

근로자의 준수사항

-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에서 보호구 착용, 흡연·음식물 섭취 금지, 유해장소 출입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함(중전 보건규칙 제238조의 2부터 제238의 4 ⇒ 보건규칙 제97조부터 제99조로 조항을 변경하고, ②항에 근로자 준수 사항 신설)



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!

- 석면함유 건축물·설비의 유지·관리 목적으로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·대체 또는 덧씌움, 안정화 작업 중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작업 역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해당되므로 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(보건규칙 제95조~제103조)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준수 의무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체 뿐만 아니라 **비등록 업체**도 해당됩니다.
- 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(보건규칙 제95조~제103조)을 위반하는 것은 그 작업의 성격상 그 즉시 근로자(인근주민)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
⇒ 따라서 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**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